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Question

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?

Answer

-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(Demand)를 제출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합니다.
-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(Demand)를 제출한 후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제예비심사기관에도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.

Question

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?

Answer

-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하며,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.

Question

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?

Answer

- 그렇지 않습니다. 조약 19조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,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는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Question

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구항에 대하여도 국제예비심사를 합니까?

Answer

-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정 청구항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으며, 견해서(Written Opinion)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.

Question

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?

Answer

- 출원인은 국제조사 단계에서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Request(출원서)이외의 부분(명세서, 청구범위, 요약서, 도면) 또는 국제조사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한해 가능합니다.

Question

출원인은 출원서(Request)의 기재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?

Answer

- 그렇지 않습니다. 출원서(Request)의 기재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관청에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